

第15次 韓・日学術交流会

学術交流会資料

日 時 : 2019年10月15日(火)

場 所 : 釜山地方税務士会会館

釜山地方税務士会/近畿税理士会

목 차

I 회장인사

- (1)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인사 03
- (2)긴끼세리사회 회장인사 05

II 한국측 발표자료(일본측 질문)

- (1)한국에서의 세무행정의 AI 화의 전망과 세무전문가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07
- (2)한국판 고향납세제도의 개요와 이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에 대하여 11
- (3)개성공업단지 진출기업에 대한 과세관계 17

III 일본측 발표자료(한국측 질문)

- (1)제 4 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에 대하여 25
제 4 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며, 세무업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2)일본의 가업승계제도에 대하여 29

目 次

I 会長あいさつ

- | | |
|----------------|----|
| (1)釜山地方税務士会 会長 | 04 |
| (2)近畿税理士会 会長 | 06 |

II 韓国側の発表資料(日本側質問)

- | | |
|---|----|
| (1)韓国における税務行政の A I 化の展望と税務専門家制度に与える影響について | 08 |
| (2)韓国版ふるさと納税制度の概要とこれに対する韓国税務士会の意見について | 12 |
| (3)開城工業団地進出企業に対する課税関係について | 18 |

III 日本側の発表資料(韓国側質問)

- | | |
|---|----|
| (1)第 4 次産業革命と人工知能 (A I) について | 26 |
| 第 4 次産業革命は、人工知能による自動化と関連性が最大化される産業環境の変化を意味し、税務業界にも大き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このことを克服するためにどのように対処すべきか。 | |
| (2)日本の事業承継税制について | 30 |

긴끼세리사회·부산지방세무사회
「제 15 회 학술교류회」 (2019. 10. 15)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강정순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강정순입니다.

먼저, 스기타 무네히사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오시는 교통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제 15 회 학술교류회에 참석해 주신 긴끼세리사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끼세리사회와 부산지방세무사회의 교류회는 연륜이 깊은 만큼 양국간 우정도 참으로 두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회계와 세법에 대하여 상호간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양국의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긴끼세리사회와 부산지방세무사회는 변함없는 우정을 유지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양국 회원들의 세무지식도 향상시키고, 조세제도 발전을 함께 이루시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부산방문이 편안한 여행길이 되시기를 바라고 스기타 무네히사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近畿税理士会・釜山地方税務士会

「第15回 学術交流会」(2019.10.15)

釜山地方税務士会 会長 姜政淳 挨拶

こんにちは!

釜山地方税務士会 会長 姜政淳です。

まず、杉田宗久会長の就任を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来られる交通の便が不便にも関わらず、第15回学術交流会に参加して下さった近畿税理士会 役職員の皆様に感謝の言葉を申し上げます。

近畿税理士会と釜山地方税務士会の交流会は年輪が深いだけに、両国間の友情も真に厚いということが出来ます。

その間、会計と税法について、相互間討論し、情報を交換することによって、両国の租税制度発展に寄与をしてきたと考えます。

今後も近畿税理士会と釜山地方税務士会は、変わらない友情を維持し、情報を交換し、両国会員たちの税務知識を向上させ、租税制度発展を共に成し遂げるように希望します。

今回の釜山訪問が、心安らかな旅行になられることを願いつつ、杉田宗久会長と役職員皆様全員が幸せいっぱいになるよう、祈っております。

긴 끼 세 리 사 회 · 부 산 지 방 세 무 사 회
「제 15 회 학 술 교 류 회」 (2019. 10. 15)
긴끼세리사회 회장 스기타무네히사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こんにちは)

긴끼세리사회 스기타 무네히사 회장입니다.

오늘 강정순 회장님을 비롯한 부산지방세무사회 임원 여러분과 이곳 부산에서 만나 뵙게 된 것을 대단히 즐겁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산지방세무사회 임원 여러분과의 제 15 회 학술교류회 준비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회와 당회는 실질적인 교류를 위하여 2005년 11월부터 매년 학술교류회를 개최하여 친선관계를 충실하게 구축하여 왔으며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한일관계가 긴박합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민간단계인 교류회야말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학술교류회가 양회의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더 깊게 하는 의미 있는 교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 드립니다.

또한 내일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2019AOTCA 부산회의가 개최됩니다. 귀 회에서는 그 준비에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동 회의가 아시아·오세아니아 제국의 세무전문 직업체도의 발전과 각국 단체간의 교류촉진 및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의 장으로써 더욱 촉진시켜,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귀 회가 더욱더 발전하시고 강회장 및 임원 여러분의 건강과 융성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感謝いたします。)

2019년 10월 15일

긴 끼 세 리 사 회
회 장 스기타 무네히사

近畿税理士会・釜山地方税務士会
「第15回 学術交流会」(2019.10.15)

近畿税理士会会長 杉田宗久あいさつ

안녕하십니까. (こんにちは)

近畿税理士会会長の杉田宗久でございます。

안녕하십니까

本日は、姜 政 淳会長様はじめ釜山地方税務士会の役員の皆様方と、この釜山の地でお会いできることを大変楽しみにしておりました。

また、釜山地方税務士会の役員の皆様方には、第15回学術交流会の開催に当たり、その準備に格別なるご尽力を賜りましたことを、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貴会と当会は実質的な交流を深めるため、2005年11月から毎年、学術交流会を開催し、充実した親善関係を築くとともに、大きな成果を上げてまいりました。

また、最近の日韓関係は厳しいものがありますが、こんな時だからこそ、民間レベルのこのような交流こそ重要なものであると考えられます。

本日の学術交流会が両会の相互理解と友好をさらに深める有意義なものとなりますことを、心から念願しております。

また、明日10月16日から18日まで、2019AOTCA釜山会議が開催されます。貴会におかれては、その準備にも大変なご苦勞があったことと存じますが、同会議がアジア・オセアニア諸国の税務専門職業制度の発展と各国団体間の一層の交流促進及び租税に関する情報交換の場として、成功することを祈念しております。

안녕하십니까

結びにあたり、貴会のますますのご発展と、姜会長様 並びに 役員皆様のご健康とご隆盛を心からお祈り申し上げます、ご挨拶いたします。

감사합니다. (感謝いたします。)

2019年10月15日

近 畿 税 理 士 会
会 長 杉 田 宗 久

[일본측질문]

【질문 1】 한국에서 세무행정의 A I 화의 전망과 세무전문가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A.

1 . 한국 세무행정의 A I 화 전망

한국의 국세청은 국세청 내 조직으로 2019 년 6 월 인공지능(A I)기반의 빅데이터 센터(Big Data Center)설치

■조직규모 : 센터장 서기관급 1 명, 8 개팀 50 명

■목적 및 기능

- A 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불공정 탈세 대응
- 효율적인 세원분석관리
- 전문인력 양성
- 대국민 납세서비스 향상
- 국세청과 산하조직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개선
- 납세자에 대한 맞춤형 세금신고 도움자료 제공
-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2019 년 말까지 실효성이 큰 분석과제 발굴

2021 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분석과제 발굴

2 . 세무전문가 제도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측면

- 납세자 개개인 별로 전년도 세금신고 내역을 분석하여 국세청이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에 세무대리인들이 당해 연도 세금신고 대리 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음.
-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부정적 측면

- 국세행정의 A I 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현재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간편 세금신고서 작성(국세청)전수가 더욱 확대되어 세무대리인의 업무량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2017 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690 만명 중 간편신고대상자 195 만 명

※국세청은 간편신고대상자를 260 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임

[日本側質問]

Q 1 韓国における税務行政のA I 化の展望と税務専門家制度に与える影響について

A.

1. 韓国税務行政のA I 化展望

韓国国税庁は国税庁内組織で 2019 年 6 月人工知能(A I)基盤のビッグデータセンター(Big Data Center)設置

■組織規模：センター長書記官級 1 人、8 チーム 50 人

■目的及び機能

- ・ A I 等、先端技術を活用した不公正脱税対応
- ・ 効率的な税源分析管理
- ・ 専門担当者養成
- ・ 対国民納税サービス向上
- ・ 国税庁と傘下組織職員の仕事の方式改善
- ・ 納税者に対するオーダーメイド型税金申告支援資料提供
- ・ 納税者の自発的誠実申告誘導

※2019 年末まで実効性が大きい分析課題発掘

2021 年末まで段階的に分析課題発掘

2. 税務専門家制度に及ぼす影響

■肯定的側面

- ・ 納税者各個人別に、前年度税金申告内容を分析し、国税庁がメッセージを伝えるので、税務代理人が、当該年度税金申告代理時の問題点を補完することができる。
- ・ 課税資料の効率的処理

■否定的側面

- ・ 国税行政のA I 化が、本格的に運用されれば、現在、小規模事業者に適用されている簡便税金申告書作成(国税庁)件数がより一層拡大し、税務代理人の業務量が縮小される恐れがある。

※2017 年帰属総合所得税申告者 690 万人のうち

簡便申告対象者 195 万人

※国税庁は簡便申告対象者を 260 万人まで拡大する計画である。

3 . 인공지능(A I)시대 대비 세무전문가의 대응방안

■세무대리업무의 다각화

기장대리 · 세무조정 ⇒ 자문업무 · 컨설팅업무 · 자금지원알선 업무 등
※경험과 직관을 요구하는 자문업무를 인공지능이 담당하기에는 역부족

■제 4 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창업되는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 향상(심층교육필요)

※제 4 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한 세무전문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부산지방세무사회(2018.6.)와 한국세무사회(2018.11.)가 각각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

3. 人工知能(AI)時代に備える税務専門家の対応方案

■税務代理業務の多角化

記帳代理・税務調整⇒諮問業務・コンサルティング業務・資金支援斡旋業務等

※経験と直観が要求される諮問業務を人工知能が担当するには力不足

■第4次産業革命と関連して創業される新技術と新しいビジネスに対処するための能力向上(深層教育必要)

※第4次産業革命の時代に備えた税務専門家の対応方案について

釜山地方税務士会(2018.6.)と韓国税務士会(2018.11.)がそれぞれ研究サービスを実施

【질문 2】 한국판 고향납세제도의 개요와 이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에 대하여

1. 제도의 도입

2008 년 제 17 대 대통령 선거운동 때부터 정치권에서 ‘고향세’ 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이듬해인 2009 년도에 처음 발의되었으나 수도권 역차별 논란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10 년간 제 18 대 국회에서 2 건이 발의 되었고, 제 20 대 국회에서는 2017 년까지 10 건, 2018 년도 2 건 등 총 12 건의 고향세제도 관련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2. 고향납세제도 발의안 내용

고향납세제도에 대하여 발의된 법률안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방에 유리하도록 발의되어 있습니다. 아래 10 개의 발의안을 보면 고향을 특정하는 부분과 기부금의 방식도 조세이전방식과 기부금의 성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고향납세제도 법률안 내용의 비교분석 >

발의안	공 통 사 항		제 도 운 영 방 식				
	고향 특징	이전대상 제한	형 식	내 용	국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기부금성격
발의 1)	x	○	기부금	기부금	-	-	지정기부금
발의 2)	○	x	기부금	기부금	-	-	지정기부금
발의 3)	x	○	기부금	조세이전	소득세	-	정치자금
발의 4)	△ 首都圏	○ 首都圏	조세 이전	-	소득세	-	-
발의 5)	○	x	기부금	조세이전	소득세	-	정치자금
발의 6)	x	x	조세 이전	-	-	지방소득세	-
발의 7)	○	x	기부금	기부금	-	-	지정기부금
발의 8)	○	○	기부금	조세이전	소득세	-	정치자금↑
발의 9)	○	○	조세 이전	-	소득세	-	-
발의 10)	○ 住民外	x	기부금	조세이전	소득세	-	정치자금

가. “고향” 을 특정하지 않는 법률안 보다 “고향” 을 특정하는 법률안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고향의 특정방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10 년이상 거주한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출신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이전 또는 기부금 모집자를 제한하지 아니하나, 재정자립도가 30%이하인 지방자치단체, 수도권 제외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韓国版ふるさと納税制度の概要とこれに対する韓国税務士会の意見について

A.

1. 制度の導入

2008年の第17代大統領選挙運動の時から政界で「故郷税」に対する提案があり、翌年の2009年度に初めて発議されたが、首都圏逆差別論議によって推進されなかった。以後、過去10年間、第18代国会で2件が発議され、第20代国会では2017年までに10件、2018年度2件の計12件の故郷税制度関連議員立法案が発議されている。

2. ふるさと納税制度発議案の内容

ふるさと納税制度について発議された法律案は、各地方自治体別出身の国会議員達が自分の地方に有利になるよう発議されている。下記10個の発議案を見ると、故郷を特定する部分と寄付金の方式も租税移転方式と寄付金の性格に対して様々な案を提示している。

〈ふるさと納税制度法律案内容の比較分析〉

発議案	共通事項		制度運用方式				
	故郷特徴	移転対象制限	形式	内容	国税-地方税	地方税-地方税	寄付金性格
発議1)	×	○	寄付金	寄付金	—	—	指定寄付金
発議2)	○	×	寄付金	寄付金	—	—	指定寄付金
発議3)	×	○	寄付金	租税移転	所得税	—	政治資金
発議4)	△ 首都圏	○ 首都圏	租税移転	—	所得税	—	—
発議5)	○	×	寄付金	租税移転	所得税	—	政治資金
発議6)	×	×	租税移転	—	—	地方所得税	—
発議7)	○	×	寄付金	寄付金	—	—	指定寄付金
発議8)	○	○	寄付金	租税移転	所得税	—	政治資金
発議9)	○	○	租税移転	—	所得税	—	—
発議10)	○ 住民外	×	寄付金	租税移転	所得税	—	政治資金

イ、「故郷」を特定しない法律案より、「故郷」を特定した法律案が相対的に多かった。故郷の特定方式は、「該当地方自治体に10年以上居住した者」、該当地方自治体の管轄区域出身者等で規定している。

ロ、租税移転又は寄付金募集者を制限しないが、財政自立度が30%以下である地方自治体、首都圏除外などに制限する場合もある。

다. 제도운영방식입니다. 조세이전방식 또는 기부금 방식을 선호하며, 기부금 방식도 정치자금 특례 등 실질적 조세이전방식과 국세-지방세 이전방식, 지방세-지방세 이전방식 등 다양한 제안이 있습니다.

라. 기부금 방식은 정치자금 기부금형식과 지정기부금 특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 만원 이내의 금액은 110 분의 100 을, 초과금액은 100 분의 15 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며, 사업자의 경우 10 만원 초과기부금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3. 합리적인 도입방안

(1) 행정안전부의 입장(국정과제75-4)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 년부터 2019 년까지 3 개년간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의 지출급증과 세수감소로 악화된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도록 기부지역, 기부금 등 기부자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기부방식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의된 안건을 확정할 때에 다음의 4 가지 사항을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합리적인 도입방안

첫 째, 고향의 특정여부

법률안에서 고향을 특정한다는 것은 기부자를 제한한다는 것인데, 고향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거주기간, 출생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만, 고향을 특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특정한다는 것은 기부대상자를 제한한다는 것이며 개인의 기부권리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둘 째, 조세이전 대상 또는 기부금모집기관의 제한에 대하여

지방재정자립도 등 재정력 지표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법과 수도권을 제한하는 방법 등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지표가 해당 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여건이 좋다고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셋 째, 조세이전방식과 기부금방식

기부금방식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이전방식은, 지방세-지방세 이전과 국세-지방세 이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세-지방세 이전은 지방세의 가장 고유한 특징으로서 응익성(應益性)이 확보되지 않는 점 즉, 편익과 비용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세이전방식으로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은 응익성(應益性)이 아니라 응능성(應能性)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 째, 기부금의 성격

기부금의 종류에는 법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지정기부금, 지정 외 기부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공제제도가 달라집니다. 제시된 대안은 지정기부금 방식과 정치자금 기부금방식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의 정책목적상 권장하는 기부라고

ハ、制度運営方式である。租税移転方式又は寄付金方式を好むし、寄付金方式も政治資金特例等、実質的租税移転方式と、国税- 地方税移転方式、地方税- 地方税移転方式等、多様な提案がある。

ニ、寄付金方式は、政治資金の寄付金形式と指定寄付金特例を提示している。政治資金寄付金は10万ウォン以内の金額は110分の100を、超過する金額は100分の15を所得税から税額控除し、事業者の場合、10万ウォンを超過する寄付金は全額必要経費として認定される。

3. 合理的な導入方案

(1) 行政安全部の立場（国政課税 75-4）

主務省庁である行政安全部では、2017年から2019年までの3年間にわたって少子化・高齢化及び人口流出による福祉費の支出急増と税収減少で悪化した地方財政を補完するために「故郷愛寄付制」の導入を推進しており、地方自治体への寄付が可能なように寄付地域、寄付金等寄付者の選択権が尊重される寄付方式を基本方向としている。

したがって、発議された案件を確定する際に、次の4つの事項を参照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合理的な導入方案

一、故郷の特定可否

法律案で、故郷を特定するということは、寄付者を制限するということである。故郷を特定する方法としては、居住期間、出生地等を挙げられるが、故郷を特定するのが非常に困難ということである。故郷を特定するということは、寄付対象者を制限するというもので、個人の寄付権利の制限を意味するものであって、慎重に検討する必要がある事案である。

二、租税移転対象又は寄付金募集機関の制限について

地方財政自立度等財政力の指標を基準に制限する方法と首都圏を制限する方法等である。まず、我が国の地方財政指標は、該当自治体の実質的な財政能力を示さないもので、制限を置くことは適切でない。首都圏のすべての地方自治体が非首都圏の他の自治体に比して財政条件が良いと見ることもできないので、これも適切ではないと判断する。

三、租税移転方式と寄付金方式

寄付金方式がより適切な方式だと判断される。租税移転方式は、地方税-地方税移転と国税-地方税移転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にもかかわらず、地方税-地方税移転は地方税の最も固有な特徴といえる応益性が確保されない。すなわち、便益と費用が一致しなくなるということである。租税移転方式として国税を地方税で移転するのは応益性でなく応能性に基づいているという点で議論の様相が変わる。

四、寄付金の性格

寄付金の種類には法定寄付金、政治資金寄付金、指定寄付金、指定外寄付金などに区分されるが寄付金の性格により控除制度が異なる。提示された代案は指定寄付金方式と政治資金寄付金方式に区分されるが、国家の政策目的上、推奨する寄付であるな

한다면 지정기부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일종의 조세이전방식이라 할 것인데, 일본의 경우 국민의 1% 정도만이 고향기부제를 활용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결과가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지원하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향에 대한 기부금”을 확산하겠다는 정치적 선택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답례품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례품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조세경쟁을 유발하여 총 세수가 감소하므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좋으며 기부금품법에서는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 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어 답례품 제공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제안

위와 같은 합리적인 방안을 참작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틀을 설계·추진해야 될 것이며 고향세제도를 일시에 전국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일단 소규모지역(예를 들면, 지방세수 하위권 지역, 출향민(出鄕民) 상위권지역, 인구감소율 상위권지역, 고령화 상위권 지역, 인기 향토특산물 하위권 지역 등)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해보고 거기서 발생하는 장점은 실리고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차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ら指定寄付金で運営することが適切であるといえる。ただし、政治資金寄付金は一種の租税移転方式といえるが、日本の場合、国民の1%程度だけがふるさと納税制度を活用しており、また、このような結果が政策的に持続的な支援下で成されたという点を考慮する場合、「故郷に対する寄付金」を拡散するという政治的選択をするならば可能だと見える。

返礼品を許容するののかに対し、返礼品の提供は原則的に租税競争を誘発して総税収が減少するので提供できないように制度化することが適切だと判断される。したがって寄付金品募集に関する法律に根拠を置いた方が良く寄付金品法では「募集者」は募集された寄付金品の規模により100分の15以内の範囲で返礼品を提供でき返礼品提供が制限される効果がある。

(3) 提案

上記のような合理的な方案を参酌して「故郷愛寄付制」の枠組みを設計・推進すべきであり、故郷税制度を一度に全国的に導入するのではなくひとまず小規模地域(例えば、地方税収下位圏地域、出郷民上位圏地域、人口減少率上位圏地域、高齢化上位圏地域、人気郷土特産品下位圏地域など)何箇所を選定して示範的にまず実施しそこで発生する長所は活かし問題点は補完して今後全国的に拡大する方式が良いと思われる。

【질문 3】 개성공업단지 진출기업에 대한 과세관계

1. 개성공업단지(開城工業團地)

황해북도 개성특급시(黃海北道 開城特級市)에 위치해 있으며 2002년 11월에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되었으며, 면적은 66 km²에 이르며, 2016년 2월 10일 공단이 폐쇄되기 전까지 한국측에서 125 개사가 입주하였고, 종업원도 북측에서 54,988명, 남측에서 820명(자료 : 통계서비스 기록과)이 근무하였습니다.

2. 우리나라의 과세체계

(1) 남북경제협력과 세금에 대한 기본원칙

북한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북한의 외국인세금법 등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주국인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헌법 제 3 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서 북한과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보며(「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 및 제 2항), 북한에 투자한 한국기업에 대해 과세특례를 두거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2) 이중과세 방지합의

남한과 북한 당국은 조세조약의 형식이 아닌 합의의 형식으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OECD 모델 조세조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에는 거주자의 판정기준, 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 소득별로 원천지 판단기준과 과세권 배분 규정, 이중과세 방지방법에 관한 규정 등이 있습니다. 한편,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의서 제 22 조 제 2 항)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등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보고 남한에서는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한국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 3항 2호)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까지 발생한 소득의 50%(수도권 외 지역 청년창업중소기업 100%)를 감면합니다.

이 경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1개 감면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국외에서 이루어진 생산활동의 업종분류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게 되어,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6년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 3항 제 2호가 기존의 ‘제조업’에서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고 개정하였으며, 2017년 2월 7일 동법 시행령에서 제조업범위를

Q 3. 開城工業団地進出企業に対する課税関係について

1. 開城工業団地

黄海北道開城特級市に位置し2002年11月に工業、貿易、商業、金融、観光地開発を目的に開設され、面積は66km²、2016年2月10日公団が閉鎖されるまで韓国側で125社が入居し、従業員も北側で54,988人、南側で820人(資料:統計サービス記録課)が勤務した。

2. 我が国の課税体系

(1) 南北経済協力と税金に対する基本原則

北韓に投資する韓国企業は北韓の外国人税金法などにより各種税金を納付したとしても、その居住国である我が国の税法に従って法人税などの納税義務を負担することが原則である。

ところで憲法第3条は「大韓民国の領土は韓半島とその附属島嶼とする」と規定されており、現段階で北韓は祖国の平和的統一のための同伴者としての性格も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現実である。

上記のように韓国と北韓の関係は国家間関係でない統一を指向する過程で暫定的に形成される特殊関係として北韓との取引は国家間の取引でない民族内部の取引とみなされ(「南北関係発展に関する法律」第3条第1項及び第2項)、北韓に投資した韓国企業に対して課税特例を置いたり二重課税を防止するための規定が置かれている。

(2) 二重課税防止合意

韓国と北韓当局は租税条約の形式でない合意の形式で二重課税防止のための規定を置いている。OECDモデル租税条約の内容を反映して作成された「南北の間の所得に対する二重課税防止合意書」には居住者の判定基準、固定事業場の判断基準、所得別の源泉地判断基準と課税権配分規定、二重課税防止方法に関する規定などがある。一方、税金の減免又は免除を受けた場合、税金を全部納付したと認定(合意書第22条第2項)するというみなし外国納付税額控除制度もある。したがって開城工業地区税金規定などにより法人税などを減免又は免除を受けた場合にはその税金を全部納付したと見て韓国では別途の税金を納付しなくても良い。

(3) 開城工業地区に投資した韓国企業に対する課税特例

1) 創業中小企業などに対する税額減免(租税特例制限法第6条第3項2号)

最初に所得が発生した課税年度と次年度、課税年度開始日から4年までに発生した所得の50%(首都圏外地域、青年創業中小企業100%)を減免する。

この場合、同法で規定している31個の減免対象業種を経営する中小企業に該当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国外で成された生産活動の業種分類は製造業でない卸売業で見ることとなり、税額減免を適用できるのかが問題になった。それにより減免を明確にするため、2016年「租税特例制限法」第6条第3項第2号が既存の「製造業」から「製造業(製造業と類似の事業で大統領令に定める事業を含む)」に改正、また2017年2月7日同法施行令で製造業範囲を新設、さらに2019年3月20日同

신설하였고, 2019년 3월 20일 동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제조를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도 제조업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 26 조, 시행령 제 23 조 제 18 항)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기본공제(중소기업 3%, 중견기업은 수도권 1%, 그 외 지역 2%)

㉡추가공제

수도권 3%(중소기업 6%, 중견기업 5%), 수도권 밖 4%(중소기업 7%, 중견기업 6%)

3)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 104 조의 24)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국내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감면,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합니다.

3. 북한의 과세체계

(1) 일반적인 과세체계

북한은 1974년 최고인민회의 제 5기 제 3차 회의에서 주민에 대한 세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사업활동 내용에 따라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도시경영세, 자동차이용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와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체계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특례부여

북한은 현재 29개 경제특구를 두어 그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는 과세상 특례제도가 있으며, 개성공단은 개성공업 지구법에 의하여 과세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세금법과 세금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세금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과세합니다

法施行規則を一部改正して開城工業地区に所在する業者に製造依頼し製造する事業も製造業に該当して減免対象とすることとなった。

2) 雇用創出投資の税額控除(租税特例制限法第 26 条、施行令第 23 条第 18 項)

2017 年 12 月 31 日まで投資した事業用資産に対して

(a) 基本控除(中小企業 3%、中堅企業は首都圏 1%、その他地域 2%)

(b) 追加控除

首都圏 3%(中小企業 6%、中堅企業 5%)、首都圏外 4%(中小企業 7%、中堅企業 6%)

3) 開城工団進出企業の国内復帰に対する税額減免(租税特例制限法第 104 条の 24)

開城工団入居企業が首都圏外に所在する国内代替事業場に移転する場合、5 年間は 100%減免、その後 2 年間は 50%を減免する。

3. 北韓の課税体系

(1) 一般的な課税体系

北韓は 1974 年最高人民会議第 5 期第 3 次会议で住民に対する税金制度を完全に廃止した。しかし、北韓に投資する外国投資企業と外国人の場合には、その事業活動内容によって企業所得税、個人所得税、財産税、相続税、取引税、営業税、資源税、都市経営税、自動車利用税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ず、国際的な二重課税を防止するために一部国家と OECD モデル租税条約の体系にならった協約を締結している。

(2) 外国人投資企業等に特例付与

北韓は現在 29 個の経済特区を置きその地域に投資する外国人投資企業等には課税上の特例制度があり、開城工団は開城工業地区法によって課税特例規定を置いておりこれは税金法と税金規定に優先して適用され、税金種類別に次のとおり課税する。

개성공업지구 세금종류별 내역

구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	세율	감면제도
기업소득세		개성공업지구에서 소득을 얻은 기업	결산이윤	14% (일반업종) 10% (경공업, 하부구조, 첨단과학 등 장려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려·생산부문투자 : 15년이상 운영하는기업은 이윤발생연도부터 5년 면제, 이후 3년은 50% 감면 서비스부문 투자 :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은 이윤발생 연도부터 2년, 이후 1년 50% 감면 이윤재투자 : 3년이상 운영 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70%를 다음 연도 세금에서 감면
개인소득세		개성공업지구에 184일 이상체류하며 소득을 얻은 개인	월 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의 500USD 이상일 경우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당국 협정에 의한 소득면제 북측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성예금 이자와 보험금 또는 소득면제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비거주자 예금의 이자소득 면제
재산세		매년 1월 1일 현재 개성공업지구 내 영구건물 소유자	건물 용도별 취득 시 현지가격	0.1~1%	새로운 건물을 소유하였을 경우에는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면제
상속세		개성공업지구 내 재산을 상속받은 자	세금규정에서 정한 지출을 공제한 금액의 상속재산액	6~25%	-
거래세		생산부문의 기업	생산물의 판매수익금	1~2% (다만 술, 담배, 기타 기호품 등은 15%)	생산제품을 남측으로 반출하거나 다른나라에 수출할 경우 면제
영업세		서비스부문 기업	상업, 금융 등 부문별 봉사수입금과 건설물 인도 수입금	1~2% (단, 오락부분은 7%)	하부구조 부문 기업 면제 (전기, 가스, 난방, 상하수도, 용수, 도로 부문)
지방세	도시 경영세	개인 및 기업	기업 : 월노임총액, 개인 : 월수입총액	0.5%	-
	자동차 이용세	매년 1월 1일 현재 개성공업지구 내 자동차를 소유한 기업 또는 개인	자동차종류	3~60 USD	60일 이상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미사용 기간 면제

관세면제 : 개성공업지구 내 반출입 물자를 포함한 남북교역물자는 관세 면제

開城工業地区の税金種類別の内訳

区分	納税義務者	課税基準	税率	減免制度
企業所得税	開城工業地区で所得を得た企業	決算利潤	14% (一般業種)	<ul style="list-style-type: none"> ・奨励・生産部門投資：15年以上運営する企業は利潤発生年度から5年免除、以後3年は50%減免 ・サービス部門投資：10年以上運営する企業は利潤発生年度から2年、以後1年50%減免 ・利潤再投資：3年以上運営時再投資分に該当する企業所得税の70%を次年度税金から減免
			10% (軽工業、下部構造、先端科学等奨励部門)	
個人所得税	開城工業地区に184日以上滞留して所得を得た個人	月報酬額から30%を控除した金額の500USD以上の場合	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南北当局協定による所得免除 ・北側の金融機関から受けた貯蓄性預金利子と保険金又は所得免除 ・工業地区に設立された銀行に非居住者預金の利子所得免除
財産税	毎年1月1日現在開城工業地区内永久建物所有者	建物用途別取得時現地価格	0.1~1%	新しい建物を所有した場合には登録した日から5年間免除
相続税	開城工業地区内財産を相続した者	税金規定で定めた支出を控除した金額の相続財産額	6~25%	-
取引税	生産部門の企業	生産物の販売収益金	1~2% (ただし酒、タバコ、その他嗜好品等は15%)	生産製品を南側で搬出するなど他の国に輸出する場合、免除
営業税	サービス部門企業	商業、金融等部門別奉仕(サービス)収入金と建設物引渡収入金	1~2% (ただし、娯楽部分は7%)	下部構造部門企業免除 (電気、ガス、暖房、上下水道、用水、道路部門)
地方税	都市経営税	個人及び企業	企業:月労賃総額、 個人:月收入総額	-
	自動車利用税	毎年1月1日現在開城工業地区内自動車所有する企業又は個人	自動車種類	3~60 USD 60日以上自動車を使わない者は未使用期間免除

関税免除：開城工業地区内搬出入物資を含んだ南北交易物資は、関税免除

※참고

(1)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2000년 12월 16일 작성)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全文 28조)

(2)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2003년 9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 1호로 채택(全文 86조)

※参考

- (1) 南北間の所得に対する二重課税防止の合意書(2000年12月16日作成)
2000年6月15日「南北共同宣言」によって進行される経済交流と協力が国家間でない民族内部の取引であることを確認して所得に対する二重課税を防止するため(全文28条)
- (2) 開城工業地区の税金規定
2003年9月18日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決定第1号として採択(全文86条)

[한국측질문]

Q1 제 4 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A I) 에 대하여

제 4 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며, 세무업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A .

기본적으로 AI 는 세리사에 있어서 하나의 도구나 수단에 불과합니다. 역사를 뒤돌아 보면, 세리사가 사용하는 도구는 주판, 탁상용기기,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AI 도 그 변화하는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서는 AI 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공존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가 세리사를 대신한다는 지적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써 세리사의 업무는 「법령해석」 「사실인정」 「적용」이라는 세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만, 예를 들면 「호텔이용료」는 여비교통비, 교제비, 회의비, 복리후생비로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같은 호텔이용료라도 계정과목은 여러 가지 사용합니다. AI 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데이터나 경험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결과를 도출하며 이러한 「사실인정」을 전부 AI 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AI 가 보급되어도 세리사는 전문가로서의 판단의 필요성·중요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AI 가 회계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유식자로부터 여러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며, 세리사업계에서도 그 영향은 적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낙관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서는 AI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그 영향에 대하여 각 담당부서에서도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논의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무상독점인 세리사업무는 세무대리, 세무서류작성, 세무상담으로 되어 있으나 AI 는 세무서류작성, 세무상담에 활용되리라고 예상된다.
- AI 에 의한 세무서류작성이란 이용자 본인이 일반적인 회계소프트와 같은 수단으로서 AI 를 이용하여 세무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며 세리사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 AI 에 의한 세무상담이란 이용자 본인이 서적이나 세법을 참고하는 것과 같은 수단으로서 AI 를 이용하는 것이며 세리사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 약질적인 AI 제공업체나 저질적인 AI 를 제공하는 업자 등에 대하여, 행정과 연계하여 이에 대응하리라 예상된다.
- AI 로 고문거래처에서 스스로 기장을 하는, 이른바 기장대행업무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韓国側質問]

Q1 第4次産業革命と人工知能（AI）について

第4次産業革命は、人工知能による自動化と関連性が最大化される産業環境の変化を意味し、税務業界にも大き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このことを克服するためにどのように対処すべきか。

A.

基本的には、AIは税理士にとって一つのツールにすぎないと考えている。歴史を振り返ると、税理士が使う道具は、そろばん、電卓、パソコン、スマートフォンと変化してきており、AIもその一環である。日本税理士会連合会としては、AIを排除するのではなく、共存する方向で対応することを考えている。

また、AIが税理士に取って代わるとの指摘は間違いであると考えている。一例として、税理士の仕事は「法令解釈」「事実認定」「適用」の三つの観点から行われるが、例えば「ホテル利用料」は旅費交通費、交際費、会議費、福利厚生費にもなり得るというように、同じホテル利用料でも勘定科目は様々である。AIはあくまでも、過去のデータや経験から自己学習し、結果を導くものであり、こうした「事実認定」を全てAIが判断することは難しい。そのため、AIが普及したとしても、税理士による専門家としての判断の必要性・重要性に変わりはない。

しかしながら、AIが会計業界に及ぼす影響は、有識者において様々な見解が示されており、税理士業界においてもその影響は少なくないとする意見もあることから、楽観ばかりしてられないことも事実である。日本税理士会連合会においては、AIに関する情報収集を進めており、その影響について、各分掌機関において慎重に議論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ある。

現在の議論においては、主に以下のような意見が示されている。

- 無償独占である税理士業務は、税務代理、税務書類の作成、税務相談とされているが、AIは、税務書類の作成、税務相談に活用されることが予想される。
- AIによる税務書類の作成とは、利用者本人が一般の会計ソフトと同様にツールとしてAIを利用し税務書類を作成するものであり、税理士法に接触するとは言えない。
- AIによる税務相談とは、利用者本人が書籍や税法を参照することと同様にツールとしてAIを利用するものであり、税理士法に接触するとは言えない。
- 悪質なAI提供者や低品質なAIを提供する業者などへの対応について、行政と連携した対応が必要になることが予想される。
- AIにより、顧問先企業の自計化が進み、いわゆる記帳代行業務は縮小していくことが予想される。

- AI 로 인해 세리사사무소의 효율화가 이루어져 단순작업으로부터 회계 컨설팅 등에 의한 고도의 작업자원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대규모의 세리사법인 등이 AI 로, 세무상담서비스를 홈페이지에 무료로 제공 하여 고문거래처를 획득하는 광고수단으로의 활용이 예상 된다.
- 납세자가 세리사사무소에 기대하는 서비스 내용이 고도화 · 복잡화하므로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AI 를 유효하게 활용하여 세리사사무소의 경영의 효율화 를 꾀할 것으로 예상 된다.
- 일본세리사연합회서는 새로운 기술을 부정할 이유는 없고 세리사 각자는 새로운 기술, 지식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고문거래처에게 제안, 설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일본세리사연합회 · 세리사회에서 세리사사무소에 AI 도입이나 회계컨설팅 등에 관한 연수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용

일본세리사연합회 · 한국세무사회(2019 년 1 월 31 일)「제 22 회 정기간담회 질문 사항 및 회답」(3-6)

- A Iにより、税理士事務所の効率化が図られ、単純作業からより会計コンサルティングなどにより高度な作業にリソースが割かれることが予想される。
- 大規模税理士法人などがA Iによる税務相談サービスをホームページで無償提供し、顧問先獲得の広告ツールに活用することが予想される。
- 納税者が税理士事務所に期待するサービス内容が高度化・複雑化する中、それに対応するためには、A Iを有効活用して税理士事務所経営を効率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予想される。
- 日税連としては、新しい技術を否定する理由はなく、個々の税理士は新しい技術、知識を積極的に吸収し、顧問先企業に提案、説明できるようにしておく必要があるものと考え、日税連・税理士会において、税理士事務所へのA I導入や会計コンサルティングなどに関する研修を実施する必要があることが予想される。

※引用

日本税理士会連合会・韓国税務士会（2019年1月31日）「第22回定期懇談会質問事項及び回答」（3-6）

Q 2.일본의 가업승계제도에 대하여

A.

법인판 가업승계제도 (비상장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상속세의 납세유예·면제)

가업승계제도는 2008 년 신설되었으며(일반조치), 그 후 개정을 여러 번 하였으나 이 제도의 이용실적은 저조하였다. 그 이유로서 상시 종업원의 수에서 8 할을 유지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납세유예가 중단 되는 등, 이 제도를 이용하여도 상속·증여를 받은 주식 등의 평가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과세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2018 년 세법개정 시 도입된 사업승계제도는 10 년간의 특별조치로써 신설되었으나, 일반조치에 비하여 특례조치의 쪽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10 년간은 누구나 특례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나, 10 년이 지난 후에는 특단의 세제상의 수단이 없는 한 일반조치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업승계제도의 특례조치를 받기 위하여는, 회사의 후계자나 승계시점까지의 경영전망 등을 기재한 「특례승계계획」을 만들어 인정경영 혁신 등 지원기관(상공회, 상공회의소, 세리사, 변호사, 금융기관 등)의 소견을 기재하여, 2023 년 3 월 31 일까지 토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세리사의 주된 고문거래처는 중소기업·소규모 기업이며 경영자의 7 할은 고문세리사 등을 경영문제의 상담상대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세리사는 그 특징에서도 고문기업이 사업승계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최적의 존재인 것이며, 경영자에 대하여 사업승계를 깨닫게 하고 고문거래처 기업의 경영의 투명한 가시화·기업의 매력을 보이게 하는 것 등을 지도하는 등 주도적인 입장에서 원활한 사업승계를 해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례조치와 일반조치의 비교

	특례조치	일반조치
사전계획책정 등	5년 이내 특례승계계획 제출 (2018년4월1일부터 2023년3월31일까지)	필요 없음
적용기한	10년 이내 증여·상속 등 (2018년1월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	없음
대상주식수	주식 전부	총 주식수의 최대2/3까지
납세유예비율	100%	증여 : 100% 상속 : 80%

Q2. 日本の事業承継税制について

A.

法人版事業承継税制（非上場株式等についての贈与税・相続税の納税猶予・免除）

事業承継税制は、2008年に創設され（一般措置）、その後のいくつかの改正を経たが、この税制の利用実績は低調であった。その理由としては、常時使用従業員数において、8割の雇用維持が達成できないと納税猶予が原則打ち切られることや、制度を利用して相続・贈与を受けた株式等の評価額の一部について相続税・贈与税が課税される場合があることは変わらなかったためである。

2018年税制改正によって導入された事業承継税制は、10年間の特例措置として創設されたが、一般措置に比べると特例措置の方が納税者に有利であるため、10年間は誰もが特例措置を用いることができるが、10年経過後は、特段の税制上の手当てのない限り、一般措置のみが利用可能なものとして残ることになる。

事業承継税制の特例措置の適用を受けるためには、会社の後継者や承継時までの経営見通し等を記載した「特例承継計画」を策定し、認定経営革新等支援機関（商工会、商工会議所、税理士、弁護士、金融機関等）の所見を記載のうえ、2023年3月31日までに都道府県知事に提出し、その確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税理士の主な顧問先は中小企業・小規模企業であり、経営者の7割は顧問税理士等を経営問題の相談相手と考えている。また、税理士は、その特徴からも顧問先企業の事業承継ニーズを察知するには最も適した存在であり、経営者に対して、事業承継の気付きを与え、顧問先企業の見える化・魅せる化を指導するなど、主導的な立場で円滑な事業承継を進めていくことが期待されている。

特例措置と一般措置の比較

	特例措置	一般措置
事前の計画策定等	5年以内の特例承継計画の提出 (2018年4月1日から 2023年3月31日まで)	不要
適用期限	10年以内の贈与・相続等 (2018年1月1日から 2027年12月31日まで)	なし
対象株数	全株式	総株式数の最大3分の2まで
納税猶予割合	100%	贈与：100% 相続：80%

승계모형	복수주주로부터 최대 3명 후계자	복수의 주주로부터 1명의 후계자
고용확보요건	탄력화 (35페이지, 45페이지)	승계 후 5년간 평균 8 할의 고용유지 필요
사업 계속이 곤란한 사유발생 한 경우 면제	있음 (49페이지)	없음
상속 시 정산과세적용	60세 이상인 자가 20세 이상인 자에게 증여	60세이상자로부터20세이상의추정 상속인(직계비속)·손자에게증여

※특례조치 적용을 전제로 기재하며, 일반조치와 특례조치로서 다른 부분은 별도의 내용을 기재한다.

1.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 및 면제

유예 및 면제절차 등

(1)특례승계계획의 책정·제출·확인 (특례조치)	<p>회사의 후계자나 승계시점까지 경영전망 등을 기재한 「특례승계계획」을 책정하여 인정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세리사, 상공회, 상공회의소 등)의 소견을 기재한 후 2023년3월31일까지 토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일반조치에 대하여는, 특례승계계획의 책정 등은 필요없다.</p>
(2)증여	<p>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선대 경영자 등인 증여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정 수 이상의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를 받아야 한다.</p>
(3)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p>회사의 요건, 후계자(수증자)의 요건, 선대 경영자 등의(증여자)요건을 충족한 경우 토도부현 지사에게 「원활화법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p> <p>또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뜻을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서 및 일정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며, 납세유예 받은 증여세액 및 이자세액에 상응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p> <p>◆이 제도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p> <p>1 회사의 주된 요건</p>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p> <p>(1) 상장회사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3) 풍속영업회사 (4) 자산관리회사(유가증권,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현금·예금 등의 특정자산의 보유비율)</p>

承継パターン	複数の株主から最大3人の後継者	複数の株主から1人の後継者
雇用確保要件	弾力化（36ページ、46ページ）	承継後5年間 平均8割の雇用維持が必要
事業の継続が困難な事由が生じた場合の免除	あり（50ページ）	なし
相続時精算課税の適用	60歳以上の者から 20歳以上の者への贈与	60歳以上の者から20歳以上の推定 相続人（直系卑属）・孫への贈与

※特例措置の適用を前提として記載しつつ、一般措置と特例措置とで異なる部分については、別途その内容を記載する。

1. 非上場株式等についての贈与税の納税猶予及び免除

手続きの流れ等

(1) 特例承継計画の策定・提出・確認 (特例措置)	<p>会社の後継者や承継時までの経営見通し等を記載した「特例承継計画」を策定し、認定経営革新等支援機関（税理士、商工会、商工会議所等）の所見を記載の上、2023年3月31日までに都道府県知事に提出し、その確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p> <p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一般措置については、特例承継計画の策定等は不要である。</p>
(2) 贈与	<p>この制度の適用を受けるためには、先代経営者等である贈与者から、全部又は一定数以上の非上場株式等の贈与を受ける必要がある。</p>
(3) 贈与税の申告期限までの間	<p>会社の要件、後継者(受贈者)の要件、先代経営者等(贈与者)の要件を満た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の都道府県知事の「円滑化法の認定」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p> <p>また、贈与税の申告期限までに、この制度の適用を受ける旨を記載した贈与税の申告書及び一定の書類を税務署へ提出するとともに、納税が猶予される贈与税額及び利子税の額に見合う担保を提供する必要がある。</p> <p>◆この制度の適用を受けるための要件</p> <p>1 会社の主な要件</p> <p>次の会社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こと</p> <p>(1) 上場会社</p> <p>(2) 中小企業者に該当しない会社</p> <p>(3) 風俗営業会社</p> <p>(4) 資産管理会社（有価証券、自ら使用していない不動産、</p>

총자산의 70% 이상인 회사(자산보유형 회사)나 이들 특정자산으로부터 운용수입이 총수입금액의 75% 이상인 회사(자산운용형 회사)를 말한다.) 단,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예는 제외.

2 후계자인 수증자의 주된 요건

증여시점에서

- (1)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을 것
- (2) 20세 이상일 것
- (3) 임원 취임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
- (4) 후계자 및 후계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총 의결권수의 50%초과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
- (5) 후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수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할 것(특별조치)

가 후계자가 1명인 경우

후계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기타 후계자를 제외한다)중에서 가장 많은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후계자가 2명 또는 3명의 경우

총 의결권수의 10%이상의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후계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기타 후계자를 제외한다)중에서 가장 많은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

일반조치에 대하여는 「후계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 이 요건이 됨

3 선대 경영자 등인 증여자의 주된 요건

- (1)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을 것
- (2) 증여 직전에 증여자 및 증여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총의결권수의 50%초과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후계자를 제외한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
- (3) 증여시점에서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을 것

4 담보제공

납세유예 받은 증여세액 및 이자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주 수 요건(특별조치)>

現金・預金等の特定の資産の保有割合が総資産の総額の70%以上の会社（資産保有型会社）やこれらの特定の資産からの運用収入が総収入金額の75%以上の会社（資産運用型会社）をいう。）ただし、一定の要件を満たすものを除く。

2 後継者である受贈者の主な要件

贈与の時ににおいて、

- (1) 会社の代表権を有していること
- (2) 20歳以上であること
- (3) 役員の就任から3年以上を経過していること
- (4) 後継者及び後継者と特別の関係がある者で総議決権数の50%超の議決権数を保有することとなること
- (5) 後継者の有する議決権数が、次のイ又はロに該当すること（特例措置）

イ 後継者が1人の場合

後継者と特別の関係がある者（他の後継者を除く。）の中で最も多くの議決権数を保有することとなること

ロ 後継者が2人又は3人の場合

総議決権数の10%以上の議決権数を保有し、かつ、後継者と特別の関係がある者（他の後継者を除く。）の中で最も多くの議決権数を保有することとなること

一般措置については、「後継者と特別の関係がある者の中で最も多くの議決権数を保有することとなること」が要件となる。

3 先代経営者等である贈与者の主な要件

- (1) 会社の代表権を有していたこと
- (2) 贈与の直前において、贈与者及び贈与者と特別の関係がある者で総議決権数の50%超の議決権数を保有し、かつ、後継者を除いたこれらの者の中で最も多くの議決権数を保有していたこと
- (3) 贈与時ににおいて、会社の代表権を有していないこと

4 担保提供

納税が猶予される贈与税額及び利子税の額に見合う担保を税務署に提供する必要がある。

<非上場株式等の取得株数要件（特例措置）>

	<p>후계자는 다음의 1 또는 2의 구분에 상응하는 일정 수 이상의 비상장주식 등을 취득해야 한다.</p> <p>1 후계자가 1명인 경우 다음의 (1) 또는 (2)의 구분에 상응하는 주식수 (1) $a \geq b \times 2 / 3 - c$의 경우... 「$b \times 2 / 3 - c$」 이상의 주식 수 (2) $a < b \times 2 / 3 - c$의 경우... 「a」의 주식 전부</p> <p>2 후계자가 2명 또는 3명의 경우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 수</p> <p>(1) $d \geq b \times 1 / 10$ (2) $d >$ 증여 후에 선대경영자 등이 보유한 회사의 비상장주식 등의 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a : 증여 직전에 선대경영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등의 수 b : 증여 직전 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총수 c : 후계자가 증여직전 보유한 회사의 비상장주식 등의 총수 d : 증여 후에 후계자가 보유한 주식 등의 수</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일반조치에 대하여는 후계자가 1명의 경우와 같은 방식의 주식수만큼 비상장주식 등을 취득해야 한다. 게다가 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수는 앞 페이지 <비상장주식등의 취득주수 요건 (특별조치)>의 항목 1(1)의 경우는「$b \times 2 / 3 - c$」의 수가, 동 항목 1(2)의 경우는「a」의 수가, 각각 한도로 된다</p> </div>
(4)증여세 신고기한	<p>증여 받은 연도의 다음해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p>
(5)납세유예기간 중	<p>납세유예를 계속 적용 받기 위하여는 신고 후에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등을 계속 보유 해야 한다 단,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등 일정의 경우(확정신고)에는 납세유예 받은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자세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면제대상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유예세액이 일정부분 면제된다).</p> <p>「면제대상증여」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 등이 후계자에게 증여되어, 그 후계자가</p>

	<p>後継者は、次の1又は2の区分に応じた一定数以上の非上場株式等を取得する必要がある。</p> <p>1 後継者が1人の場合 次の(1)又は(2)の区分に応じた株数 (1) $a \geq b \times 2 / 3 - c$ の場合・・・「$b \times 2 / 3 - c$」以上の株数 (2) $a < b \times 2 / 3 - c$ の場合・・・「a」の全ての株数</p> <p>2 後継者が2人又は3人の場合 次の全てを満たす株数 (1) $d \geq b \times 1 / 10$ (2) $d >$ 贈与後における先代経営者等の有する会社の非上場株式等の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a : 贈与の直前において先代経営者等が有していた会社の非上場株式等の数 b : 贈与の直前の会社の発行済株式等の総数 c : 後継者が贈与の直前において有していた会社の非上場株式等の数 d : 贈与後における後継者の有する会社の非上場株式等の数</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一般措置については、後継者が一人の場合と同様の株数の非上場株式等を取得する必要がある。 なお、対象となる非上場株式等の数は、前ページ<非上場株式等の取得株数要件(特例措置)>の項目1(1)の場合は「$b \times 2 / 3 - c$」の数が、同項目1(2)の場合は「a」の数が、それぞれ限度となる。</p> </div>
(4) 贈与税の申告期限	<p>贈与を受けた年の翌年の2月1日から3月15日までに、受贈者の住所地の所轄の税務署に贈与税の申告をする必要がある。</p>
(5) 納税猶予期間中	<p>申告後も引き続きこの制度の適用を受けた非上場株式等を保有すること等により、納税の猶予が継続される。</p> <p>ただし、この制度の適用を受けた非上場株式等を譲渡するなど一定の場合(確定事由)には、納税が猶予されている贈与税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利子税と併せて納付する必要がある(「免除対象贈与」に該当する場合には、一定部分の納税猶予税額が免除される。)</p> <p>「免除対象贈与」とは、この制度の適用を受けている非上場株式等が後継者に贈与され、その後継者が「非上場株式等につ</p>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 및 면제」
(31페이지 이하의 설명) 의 적용을 받은 경우의 증여를 말한다.

◆납세유예 받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주된 경우

(1)아래표의 「A」 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유예 받은 증여세액 전액과 이자세를 함께 납부한다.

이 경우 이 제도의 적용은 종료 한다.

(2)아래표의 「B」 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유예 받은 증여세액 중에서, 양도 등을 한 부분에 대응하는 증여세와 이자세를 함께 납부한다.

(주) 양도 등을 한 부분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증여세에 대하여는 납세유예가 계속 된다.

납세유예세액을 납부해야 할 주된 경우	(특례) 경영 증여승계기간 이내	(특례) 경영증여 승계기간 경과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 등에 대하여 그 일부를 양도 등 (「면제대상증여」를 제외.) 을 한 경우	A	B
후계자가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A (※ 1)	C (※ 2)
회사가 자산관리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만족 시 제외)	A	A
일정한 기준일에 고용평균 「증여 시 고용8할」 을 하회한 경우	C (※ 2, 3) 일반조치는 A	C (※ 2)

※ 1 어쩔 수 없는 이유 (47페이지참조) 가 있는 경우 제외

2 「C」 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유예가 계속 된다

3 원활화법 시행령에서 하회한 이유 등을 기재하여 인정 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의 의견이 기재된 보고서를 토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いての贈与税の納税猶予及び免除」(32ページ以下の説明)の適用を受ける場合における贈与をいう。

◆納税が猶予されている贈与税を納付する必要がある主な場合

(1)下表の「A」に該当した場合には、納税が猶予されている贈与税の全額と利子税を併せて納付する。

この場合、この制度の適用は終了する。

(2)下表の「B」に該当した場合には、納税が猶予されている贈与税のうち、譲渡等した部分に対応する贈与税と利子税を併せて納付する。

(注) 譲渡等した部分に対応しない贈与税については、引き続き納税が猶予される。

納税猶予税額を納付する必要がある主な場合	(特例) 経営贈与承継期間内	(特例) 経営贈与承継期間の経過後
この制度の適用を受けた非上場株式等についてその一部を譲渡等(「免除対象贈与」を除く。)した場合	A	B
後継者が会社の代表権を有しなくなった場合	A (※1)	C (※2)
会社が資産管理会社に該当した場合(一定の要件を満たす会社を除く。)	A	A
一定の基準日における雇用の平均が、「贈与時の雇用の8割」を下回った場合	C (※2、3) 一般措置はA	C (※2)

※1 やむを得ない理由(48ページ参照)がある場合を除く。

2 「C」に該当した場合には、引き続き納税が猶予される。

3 円滑化省令では、下回った理由等を記載した認定経営革新等支援機関の意見が記載されている報告書を都道府県知事に提出し、確認を受けることとされている。なお、その報告書及び確認書の写しは、継続届出書に添付することとさ

	<p>그리고 그 보고서 및 확인서 사본은 계속하여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p> <p>4 고용평균은 (특례)경영증여 승계기간의 말일에 판정한다.</p> <p>「(특례) 경영증여 승계기간」 이란, 이 제도의 적용에 관련된 증여세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다음의 ①, ② 중 빠른날과 후계자(수증자) 혹은 선대경영자 등(증여자)의 사망일 잔일 중 빠른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p> <p>① 후계자(수증자)가 최초로 이 제도 적용과 관련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다음날 이후 5년이 경과한 날</p> <p>② 후계자 (수증자) 가 최초로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유예 및 면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속세의 신고기한 다음날 이후 5년이 경과한 날</p> <p>계속하여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계속신고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p> <p>그리고 「계속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예 받은 증여세의 전액과 이자세를 납부해야 한다.</p>
<p>(6)선대경영자 등(증여자)의 사망 등</p>	<p>선대경영자 등(증여자)의 사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신고서」·「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사망 등이 있을 때에 납세유예 받은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가 면제 된다.</p> <p>◆유예 받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p> <p>(1)선대경영자 등(증여자)가 사망한 경우</p> <p>(2)후계자(수증자)가 사망한 경우</p> <p>(3)(특례) 경영증여 승계기간 이내에 어쩔 수 없이 회사의 대표권을 갖지 않게 된 날 이후에 「면제대상증여」를 한 경우</p> <p>(4)(특례) 경영증여 승계기간 경과 후에 「면제대상증여」를 한 경우</p> <p>(5)(특례) 경영증여 승계기간 경과 후에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는 경우</p> <p>(6)(특례) 경영증여 승계기간 경과 후에 사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양도·해산한 경우</p> <p>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일정한 사유란, ①과거 3년간 중 2년 이상 적자 등의 경우 ②과거 3년중</p>

	<p>れている。</p> <p>4 雇用の平均は、（特例）経営贈与承継期間の末日に判定する。</p> <p>「（特例）経営贈与承継期間」とは、この制度の適用に係る贈与税の申告期限の翌日から、次の①、②のいずれか早い日と後継者（受贈者）若しくは先代経営者等（贈与者）の死亡の日の前日のいずれか早い日までの期間をいう。</p> <p>①後継者（受贈者）の最初のこの制度の適用に係る贈与税の申告期限の翌日以後5年を経過する日</p> <p>②後継者（受贈者）の最初の「非上場株式等についての相続税の納税猶予及び免除」の適用に係る相続税の申告期限の翌日以後5年を経過する日</p> <p>引き続きこの制度の適用を受けるためには「継続届出書」に一定の書類を添付して所轄の税務署へ提出する必要がある。</p> <p>なお、「継続届出書」の提出がない場合には、猶予されている贈与税の全額と利子税を納付する必要がある。</p>
<p>(6) 先代経営者等(贈与者)の死亡等</p>	<p>先代経営者等（贈与者）の死亡等があった場合には、「免除届出書」・「免除申請書」を提出することにより、その死亡等があったときにおいて納税が猶予されている贈与税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その納付が免除される。</p> <p>◆猶予されている贈与税の納付が免除される主な場合</p> <p>(1)先代経営者等（贈与者）が死亡した場合</p> <p>(2)後継者（受贈者）が死亡した場合</p> <p>(3)（特例）経営贈与承継期間内において、やむを得ない理由により会社の代表権を有しなくなった日以後に「免除対象贈与」を行った場合</p> <p>(4)（特例）経営贈与承継期間の経過後に「免除対象贈与」を行った場合</p> <p>(5)（特例）経営贈与承継期間の経過後において会社について破産手続開始決定などがあった場合</p> <p>(6)特例経営贈与承継期間の経過後に、事業の継続が困難な一定の事由が生じた場合において、会社について、譲渡・解散した場合</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事業の継続が困難な一定の事由とは、①過去3年間のうち2年以上赤字などの場合、②過去3年間のうち2年</p> </div>

	<p>2년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③ 이자부담채무≥매출의 6개월분의 경우 ④ 유사업종의 상장기업의 주가가 전년도 주가를 하회한 경우 ⑤ 심신장애로 후계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양도·합병 단) 를 말한다.</p> <p>일반조치에 대하여는, (6)은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납세유예 받을 증여세 등의 계산방법> <u>스텝 1.</u> 증여 받은 전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의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u>스텝 2.</u>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비상장주식 만 증여 받았다고 가정하여 증여세를 계산 한다. <u>스텝 3.</u> 스텝2의 금액이 「납세유예 받을 증여세」가 된다. 그리고, 스텝1의 금액에서 스텝2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p>
--	---

2.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유예 및 면제

유예 및 면제절차 등

(1)특례승계계획의 책정·제출·확인 (특례조치)	<p>회사의 후계자나 승계시점까지 경영전망 등을 기재한 「특례승계계획」을 책정하여 인정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세리사, 상공회, 상공회의소 등)의 소견을 기재한 후 2023년3월31일까지 토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일반조치에 대하여는, 특례승계계획의 책정 등은 필요없다.</p>
(2)상속개시	<p>상속개시 후에, 회사의 요건, 후계자(상속인 등)의 요건, 선대경영자 등(피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을 토도부현 지사에게 「원활화법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원활화법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상속개시 후 8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p>
(3)상속세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p>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상속세신고서 및 일정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며, 납세유예세액 및 이자세액에 상응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以上売上減などの場合、③有利子負債\geq売上の6か月分の場合、④類似業種の上場企業の株価が前年の株価を下回る場合、⑤心身の故障等により後継者による事業の継続が困難な場合（譲渡・合併のみ）をいう。</p> <p>一般措置については、(6)の適用はない。</p> <p><納税が猶予される贈与税などの計算方法></p> <p>ステップ1. 贈与を受けた全ての財産の価額の合計額に基づき贈与税を計算する。</p> <p>ステップ2. 贈与を受けた財産がこの制度の適用を受ける非上場株式等のみであると仮定して贈与税を計算する。</p> <p>ステップ3. ステップ2の金額が「納税が猶予される贈与税」となる。なお、ステップ1の金額からステップ2の金額を控除した金額が納付税額となり、贈与税の申告期限までに納付する必要がある。</p>
--	---

2. 非上場株式等についての相続税の納税猶予及び免除

手続きの流れ等

<p>(1) 特例承継計画の策定・提出・確認 (特例措置)</p>	<p>会社の後継者や承継時までの経営見通し等を記載した「特例承継計画」を策定し、認定経営革新等支援機関（税理士、商工会、商工会議所等）の所見を記載の上、2023年3月31日までに都道府県知事に提出し、その確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p> <p>一般措置については、特例承継計画の策定等は不要である。</p>
<p>(2) 相続開始</p>	<p>相続開始後に、会社の要件、後継者（相続人等）の要件、先代経営者等（被相続人）の要件を満た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の都道府県知事の「円滑化法の認定」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p> <p>「円滑化法の認定」を受けるためには、相続開始後8か月以内にその申請を行う必要がある。</p>
<p>(3) 相続税の申告期限までの間</p>	<p>相続税の申告期限までに、この制度の適用を受ける旨を記載した相続税の申告書及び一定の書類を税務署へ提出するとともに、納税が猶予される相続税額及び利子税の額に見合う担保を提供する必要がある。</p>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

1 회사의 주된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1) 상장회사
-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 (3) 풍속영업회사
- (4) 자산관리회사(유가증권,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현금·예금 등의 특정자산의 보유비율이 총자산의 70% 이상인 회사(자산보유형 회사)나 이들 특정자산 으로부터 운용수입이 총수입금액의 75% 이상인 회사(자산운용형 회사)를 말한다.) 단,

일정한 요건 충족 시에는 제외

2 후계자인 상속인 등의 주된 요건

- (1) 상속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을 것
- (2) 상속개시시점에 후계자 및 후계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의결권주식총수의 50%를 초과 보유하고 있을 것
- (3) 상속개시시점에 후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주식 수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할 것(특별조치)가 후계자가 1명인 경우
후계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기타 후계자를 제외 한다)중에서 가장 많은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후계자가 2명 또는 3명의 경우
총 의결권수의 10%이상의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후계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기타 후계자를 제외 한다)중에서 가장 많은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

일반조치에 대하여는 「후계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의결권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 이 요건이 됨

- (4) 상속개시 직전 회사의 임원일 것(피상속인이 60세 미만 사망한 경우는 제외 한다)

3 선대경영자 등인 피상속인의 주된 요건

- (1)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을 것
- (2) 상속개시직전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총의결권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후계자를 제외한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この制度の適用を受けるための要件

1 会社の主な要件

次の会社のいずれにも該当しないこと

- (1) 上場会社
- (2) 中小企業者に該当しない会社
- (3) 風俗営業会社
- (4) 資産管理会社（有価証券、自ら使用していない不動産、現金・預金等の特定の資産の保有割合が総資産の総額の70%以上の会社（資産保有型会社）やこれらの特定の資産からの運用収入が総収入金額の75%以上の会社（資産運用型会社）をいう。）

ただし、一定の要件を満たすものを除く。

2 後継者である相続人等の主な要件

- (1) 相続開始の日の翌日から5か月を経過する日において会社の代表権を有していること
- (2) 相続開始の時に、後継者及び後継者と特別の関係がある者で総議決権数の50%超の議決権数を保有することとなること
- (3) 相続開始の時に後継者が有する議決権数が、次のイ又はロに該当すること（特例措置）

イ 後継者が1人の場合

後継者と特別の関係がある者（他の後継者を除く。）の中で最も多くの議決権数を保有することとなること

ロ 後継者が2人又は3人の場合

総議決権数の10%以上の議決権数を保有し、かつ、後継者と特別の関係がある者（他の後継者を除く。）の中で最も多くの議決権数を保有することとなること

一般措置については、「後継者と特別の関係がある者の中で最も多くの議決権数を保有することとなること」が要件となる。

- (4) 相続開始の直前において、会社の役員であること（被相続人が60歳未満で死亡した場合を除く。）

3 先代経営者等である被相続人の主な要件

- (1) 会社の代表権を有していたこと
- (2) 相続開始直前において、被相続人及び被相続人と特別の関係がある者で総議決権数の50%超の議決権数を保有

	<p>의결권수를 보유하고 있을 것</p> <p>4 담보제공 납세유예 된 상속세 및 이자세액에 상응한 담보를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4)상속세 신고기한	<p>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통상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납세유예 상속세 등의 계산방법(특례조치)> <u>스텝 1.</u> 과세가액의 합계액을 근거로 계산한 총상속세액 중, 후계자의 과세가액에 대응하는 상속세를 계산 한다. <u>스텝 2.</u> 후계자가 비상장주식 등 특례조치 적용대상재산만 취득하였다고 가정한 상속세액 중에서, 특례조치 적용을 받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에 대응하는 후계자의 상속세액을 계산 한다.(채무나 장례비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이외의 재산에서 먼저 공제 한다). 스텝 2의 금액이 「납세유예 상속세액」이 된다. 그리고 스텝1의 금액에서 납세유예 상속세(스텝2 금액)를 공제한 금액(납부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일반조치에 대하여는, 후계자가 취득한 재산이 일반조치 적용을 받을 비상장주식 등의 20%라고 가정하여 계산한 상속세총액 중에서, 그 부분에 대응하는 후계자의 상속세액을, 스텝2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유예세액」이 되며, 스텝1의 금액에서 그 유예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수는 발행한 주식 총수의 최대 2/3가 된다.</p> </div>
(5)납세유예 기간 중	<p>신고 후에도 계속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납세유예가 계속 적용 된다.</p> <p>단,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 하는 등 일정한 사유발생(확정사유)시, 납세유예 받은 상속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자세와 함께 납부해야한다 (「면제대상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 납세유예세액이 면제 된다.)</p> <p>◆납세유예 받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된 경우</p>

	<p>し、かつ、後継者を除いたこれらの者の中で最も多くの議決権数を保有していたこと</p> <p>4 担保提供</p> <p>納税が猶予される相続税額及び利子税の額に見合う担保を、税務署に提供する必要がある。</p>
<p>(4) 相続税の申告期限</p>	<p>相続開始があったことを知った日（通常は被相続人が死亡した日）の翌日から10か月以内に、所轄の税務署に、相続税の申告をする必要がある。</p> <p><納税が猶予される相続税などの計算方法（特例措置）></p> <p><u>ステップ1.</u> 課税価格の合計額に基づいて計算した相続税の総額のうち、後継者の課税価格に対応する相続税を計算する。</p> <p><u>ステップ2.</u> 後継者が取得した財産が特例措置の適用を受ける非上場株式等のみであると仮定した相続税の総額のうち、特例措置の適用を受ける非上場株式等の額に対応する後継者の相続税を計算する（債務や葬式費用がある場合は、非上場株式等以外の財産から先に控除する。）。ステップ2の金額が、「納税が猶予される相続税」となる。なお、ステップ1の金額から、納税が猶予される相続税（ステップ2の金額）を控除した金額（納付税額）は、相続税の申告期限までに納付する必要がある。</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一般措置については、後継者が取得した財産が一般措置の適用を受ける非上場株式等の20%のみであると仮定した相続税の総額のうち、その部分に対応する後継者の相続税の額を、ステップ2の金額から控除した残額が「猶予税額」となり、ステップ1の金額から、その猶予税額を控除した残額が「納付税額」となる。なお、対象となる非上場株式等の数は発行済株式等の総数の最大3分の2になる。</p> </div>
<p>(5) 納税猶予期間中</p>	<p>申告後も引き続きこの制度の適用を受けた非上場株式等を保有すること等により、納税の猶予が継続される。</p> <p>ただし、この制度の適用を受けた非上場株式等を譲渡するなど一定の場合（確定事由）には、納税が猶予されている相続税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利子税と併せて納付する必要がある（「免除対象贈与」に該当する場合には、一定部分の納税猶予税額が免除される。）。</p> <p>◆ 納税が猶予されている相続税を納付する必要がある主な場合</p>

- (1)아래표의 「A」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유예 받은 상속 세액 전액과 이자세를 합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이 제도의 적용은 종료한다.
- (2)아래표의 「B」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유예 받은 상속 세액 중 양도한 부분에 대응하는 상속세와 이자세를 합하여 납부한다.
- (주) 양도한 부분에 대응하지 아니하는 상속세에 대하여 계속 납세가 유예 된다.

납세유예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특례)경영증여 승계기간 내	(특례)경영증여 승계기간 경과 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 등에 대하여 그 일부를 양도(「면제대상 증여」를 제외)한 경우	A	B
후계자가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A (※ 1)	C (※ 2)
회사가 자산관리 회사에 해당한 경우(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외)	A	A
일정한 기준일에 고용평균이 「증여 당시의 고용의 8할」을 하회한 경우	C (※ 2, 3) 일반조치는 A	C (※ 2)

- ※1 어쩔 수 없는 이유(하단 참조)가 있는 경우 제외
 2 「C」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납세유예 된다
 3 원활화 시행령에서 밀둔 이유 등을 기재한 인정경영 혁신 등 지원기관의 의견이 기재된 보고서를 토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보고서 및 확인서사본은 계속 신고서에 첨부한다.
 4 고용평균은, (특례)경영승계기간의 말일에 판정 한다.

「어쩔 수 없는 이유」란, 다음에 제기하는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함을 말한다
 ①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 (1)下表の「A」に該当した場合には、納税が猶予されている相続税の全額と利子税を併せて納付する。この場合、この制度の適用は終了する。
- (2)下表の「B」に該当した場合には、納税が猶予されている相続税のうち、譲渡等した部分に対応する相続税と利子税を併せて納付する。
- (注) 譲渡等した部分に対応しない相続税については、引き続き納税が猶予される。

納税猶予税額を納付する必要がある主な場合	(特例) 経営贈与承継期間内	(特例) 経営贈与承継期間の経過後
この制度の適用を受けた非上場株式等についてその一部を譲渡等(「免除対象贈与」を除く。)した場合	A	B
後継者が会社の代表権を有しなくなった場合	A (※1)	C (※2)
会社が資産管理会社に該当した場合(一定の要件を満たす会社を除く。)	A	A
一定の基準日における雇用の平均が、「贈与時の雇用の8割」を下回った場合	C (※2、3) 一般措置はA	C (※2)

※1 やむを得ない理由(下段参照)がある場合を除く。

2 「C」に該当した場合には、引き続き納税が猶予される。

3 円滑化省令では、下回った理由等を記載した認定経営革新等支援機関の意見が記載されている報告書を都道府県知事に提出し、確認を受けることとされている。なお、その報告書及び確認書の写しは、継続届出書に添付することとされている。

4 雇用の平均は、(特例)経営承継期間の末日に判定する。

「やむを得ない理由」とは、次に掲げる事由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ことになったことをい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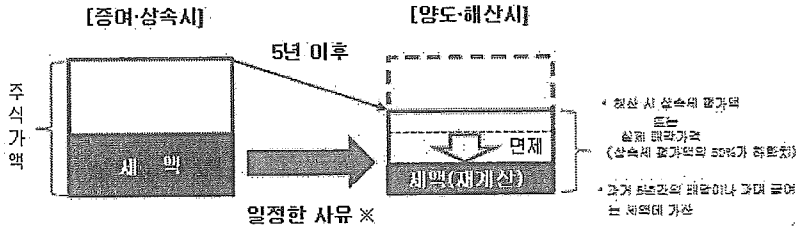
①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り精

	<p>정신장애자 보건복지대장(장애 등급 1급인 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한 한다)을 교부 받을 것</p> <p>②신체장애자 복지법의 규정에 의거 신체장애자 대장(신체상 장애의 정도가 1급 또는 2급인 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에 한 한다)을 교부 받을 것</p> <p>③개호보험법의 규정에 의거 개호가 필요함을 인정(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개호필요5에 해당하는 자에 한 한다)받을 것</p> <p>④위 ①부터 ③까지 제기한 사유에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것</p> <p>계속하여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계속신고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한다</p> <p>그리고, 「계속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 유예 받은 상속세 전액과 이자세를 합하여 납부해야 한다.</p>
(6)후계자의 사망 등	<p>후계자가 사망 등을 한 경우 「면제신고서」·「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망 등이 있을 때 납세유예 받은 상속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세가 면제 된다.</p> <p>◆납세유예 받은 상속세 납부가 면제 되는 주된 경우</p> <p>(1)후계자가 사망한 경우</p> <p>(2)(특례) 경영승계 기간 이내에 어쩔 수 없는 사유(앞 페이지 중간 참조)로 대표권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후에 「면제대상증여」를 한 경우</p> <p>(3)(특례) 경영승계 기간 경과 후에 「면제대상증여」를 한 경우</p> <p>(4)(특례) 경영승계 기간 경과 후에 회사가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p> <p>(5)특례경영 승계기간 경과 후에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 회사가 양도·해산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일반조치에 대하여는, (5)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p>

	<p>神障害者保健福祉手帳（障害 等級が1級である者として記載されているものに限ります。）の交付を受けたこと</p> <p>②身体障害者福祉法の規定により身体障害者手帳（身体上の障害の程度が1級又は2級である者として記載されているものに限ります。）の交付を受けたこと</p> <p>③介護保険法の規定による要介護認定（要介護状態区分が要介護5に該当するものに限ります。）を受けたこと</p> <p>④上記①から③までに掲げる事由に類すると認められること</p> <p>引き続きこの制度の適用を受けるためには、「継続届出書」に一定の書類を添付して所轄の税務署へ提出する必要がある。</p> <p>なお、「継続届出書」の提出がない場合には、猶予されている相続税の全額と利子税を納付する必要がある。</p>
<p>(6) 後継者の死亡等</p>	<p>後継者の死亡等があった場合には、「免除届出書」・「免除申請書」を提出することにより、その死亡等があったときに納税が猶予されている相続税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その納付が免除される。</p> <p>◆ 納税が猶予されている相続税の納付が免除される主な場合</p> <p>(1) 後継者が死亡した場合</p> <p>(2) (特例) 経営承継期間内において、やむを得ない理由（前ページ中段参照）により会社の代表権を有しなくなった日以後に「免除対象贈与」を行った場合</p> <p>(3) (特例) 経営承継期間の経過後に「免除対象贈与」を行った場合</p> <p>(4) (特例) 経営承継期間の経過後において、会社について破産 手続開始の決定などがあった場合</p> <p>(5) 特例経営承継期間の経過後に、事業の継続が困難な一定の事由が生じた場合において、会社について、譲渡・解散した場合</p> <p>一般措置については、(5)の適用はない。</p>

[참고]사업의 계속에 관련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의 납세 유예액 면제에 관하여(특례 조치)

특례 경영(증여)승계 기간 경과 후에 사업의 계속에 관련한 일정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1에 특례 조치의 적용에 관련된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 등을 한 경우는 그 대가의 금액(양도 등을 했을 때 상속세 평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한치가 됩니다.※2)을 기초로 해서 상속(증여)세액 등을 재계산하며 재계산한 세액과 직전 배당 등의 금액과의 합계액이 당초의 납세 유예 세액을 밑돌 경우 그 차액은 면제됩니다(재계산한 세액은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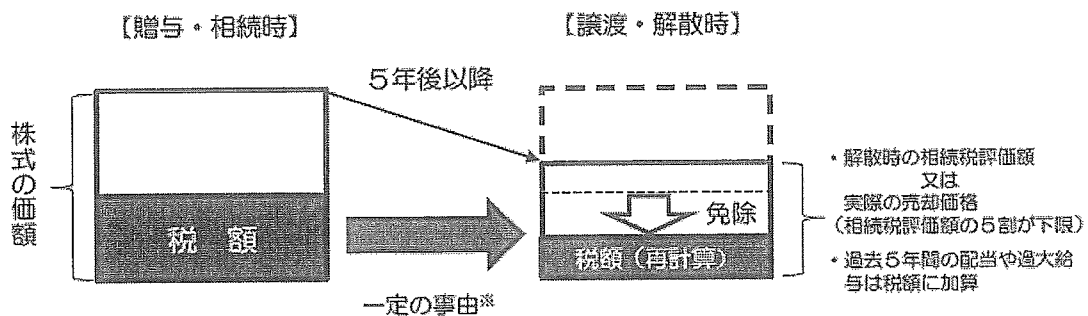
- ※1 ① 과거 3년간 중 2년 이상 적자 등의 경우 ② 과거 3년간 중 2년 이상 매출 감소 등의 경우 ③ 유이자 부채 ≥ 매출의 6% 월어치의 경우 ④ 유사 업종의 상장 기업의 주가가 전년의 주가를 밑돌 경우, ⑤ 심신의 장애 등에 따라 후계자에 의한 사업의 계속에 관련한 경우(양도 · 합병에 한정함)
- ※2 양도에서 2년 후에도, 양도 등을 했을 때 고용의 절반 이상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제의 대가금액에 근거한 세액과의 차액은 그 시점에서 면제됩니다.

3. 선대경영자 등(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취급

<p>(1)선대경영자 등(증여자)의 사망</p>	<p>「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납세유예 및 면제」 (31페이지 참조) 의 적용을 받은 비상장주식 등은,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 당시의 가액에 다른 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p> <p>그리고, 그 사이 토도부현 지사의 「원활화법의 확인」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비상장주식 등의(특례)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의 납세유예 및 면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p>
<p>(2)상속세 신고기한까지의 기간</p>	<p>◆ 「비상장주식 등의 (특례)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의 납세유예 및 면제」의 적용을 받을 경우</p> <p>「중소기업에서의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회사가 이 제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토도부현 지사에게 「원활화법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비상장주식 등의(특례)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의 납세유예 및 면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뜻을 기재한 상속세 신고서 및 일정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며 납세유예 받은 상속세 및 이자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参考) 事業の継続が困難な事由が生じた場合の納税猶予額の免除について (特例措置)

特例経営 (贈与) 承継期間の経過後に、事業の継続が困難な一定の事由が生じた場合※1に特例措置の適用に係る非上場株式等の譲渡等をした場合は、その対価の額 (譲渡等の時の相続税評価額の50%に相当する金額が下限になります※2。) を基に相続 (贈与) 税額等を再計算し、再計算した税額と直前配当等の金額との合計額が当初の納税猶予税額を下回る場合には、その差額は免除されます (再計算した税額は納付)。



- ※1 ①過去3年間のうち2年以上赤字などの場合、②過去3年間のうち2年以上売上減などの場合、③有利子負債を売上上の6か月分の場合、④類似業種の上場企業の株価が前年の株価を下回る場合、⑤心身の故障等により後継者による事業の継続が困難な場合 (譲渡・合併のみ)。
 ※2 譲渡等から2年後において、譲渡等の時の雇用の半数以上が維持されている場合には、実際の対価の額に基づく税額との差額は、その時点で免除されます。

3. 先代経営者等 (贈与者) が死亡した場合の取扱い

<p>(1) 先代経営者等 (贈与者) の死亡</p>	<p>「非上場株式等についての贈与税の納税猶予及び免除」 (32ページ参照) の適用を受けた非上場株式等は、相続又は遺贈により取得したものとみなして、贈与の時の価額により他の相続財産と合算して相続税を計算する。</p> <p>なお、その際、都道府県知事の「円滑化法の確認」を受け、一定の要件を満たす場合には、そのみなされた (非上場) 株式等について「非上場株式等の (特例) 贈与者が死亡した場合の相続税の納税猶予及び免除」の適用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p>
<p>(2) 相続税の申告期限までの間</p>	<p>◆ 「非上場株式等の (特例) 贈与者が死亡した場合の相続税の納税猶予及び免除」の適用を受ける場合</p> <p>「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に基づき、会社がこの制度の適用要件を満た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の都道府県知事の「円滑化法の確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p> <p>相続税の申告期限までに、「非上場株式等の (特例) 贈与者が死亡した場合の相続税の納税猶予及び免除」の適用を受ける旨を記載した相続税の申告書及び一定の書類を税務署へ提出するとともに、納税が猶予される相続税額及び利子税の額に見合う担保を提供する必要がある。</p>

(3)상속세 신고기한	◆납세유예 받은 상속세 등의 계산 방법 45페이지 참조

(3) 相続税の申告期限	◆ 納税が猶予される相続税などの計算方法 46ページを参照。
--------------	-----------------------------------